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528

발의연월일: 2021. 1. 20.

발 의 자:김민석·강병원·조승래

최혜영 • 한병도 • 윤후덕

이용빈 · 민병덕 · 강득구

이광재 · 서동용 · 양기대

권칠승 · 고영인 · 이수진

유기홍 • 이용선 • 장철민

조정훈 의원(19인)

제안이유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포스트 코로나 등 사회 불확실성 증대 및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생에 걸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개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함.

무엇보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가 평생학습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부여되는 기본 권리로 규정하는 바, 공정하고,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학습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평생학습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음.

이에,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평생교육 목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생교육 바우처의 발급·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여함으로 써 국민이 보다 쉽게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평생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업간 연계 등을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권한을 부여하고, 국민이 온라인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편적 평생학습의 시대를 열어가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의 목적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 모든 국민에게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활동을 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교육부장관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의2).
-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발급받은 자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 이용권을 제시하여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마.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 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함"으로 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평생교육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평생교육진흥정책"을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 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의 참 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 제2장에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급자

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따라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

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 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 다.
 - ②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제4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제20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제2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 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 ⑦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4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44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

리에 관한 사항

제45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제46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과	제1조(목적)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	
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u>정</u>
<u>정함</u> 을 목적으로 한다.	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
	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u>향상을 도모함</u>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	제2조(정의)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평생교육사업"이란 중앙행정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
	<u>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u>
	사업을 말한다.
<u><신 설></u>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
	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

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 무) ① ------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 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 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설>

<신 설>

- ----- 평생교육진흥정책과
- 평생교육사업-----.

② ~ ④ (현행과 같음)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 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 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 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 석(이하 "분석 등"이라 한다)을 하 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 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 육 · 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 석 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략)

② (생 략)

<신 설>

통보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이
용권의 발급 등 국민의 평생교육
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u>5</u> .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신청을 받
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u>있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평생
교육이용권의 수급자 선정 및 수
급자격 유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기 위하여 가족관계 증명・국세
및 지방세 등에 관한 자료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

<신 설>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 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 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이용 권의 발급,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 ②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신 설>

- ③ 누구든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 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 자가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 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이용권을 회수하거나 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 다.
- ⑤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회수,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를 체계적 ·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 확대를 위하여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부 장관은 평생교육 종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 ③ (생략)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9의3. (생 략) <신 설>

<신 설>

10. (생략)

⑤ ~ ⑧ (생 략)

- 영) ① (생 략)
 -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제23조(학습계좌) ① ~ ⑤ (생 략) 제23조(학습계좌) ① ~ ⑤ (현행과

<신 설>

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범위와 내용, 평생교육종합정보시 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③ (현행과 같음)

 - 1. ~ 9의3. (현행과 같음)
 - 10.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 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
 - 1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 ⑤ ~ ⑧ (현행과 같음)
- 제20조(시 ·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 | 제20조(시 · 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 영) ① (현행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 연계
 - 6. (현행 제5호와 같음)
 - 같음)
 - ⑥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신 설>

제42조의2(지도·감독) ①·② (생략)

<신 설>

<신 설>

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의2(지도·감독) ①·② (현 행과 같음)

- ③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자 또는 관계인에게 장부 등 서류 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1.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 2.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 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 설>

③ (생 략)

제45조의3(벌칙) (생략)

<신 설>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거	시니고	0
를 관계	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현
행과 같음)					

(2)	 	 	 	

- 1. 2. (현행과 같음)
- 3.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
- 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의3(벌칙) <u>①</u>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 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교육이용권을 발급받게 한 자
- 2.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 생교육이용권을 판매·대여하거 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정
	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 프로그
	램의 제공을 거부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